

##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 안내

### 1.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

#### ■ 사업개요

- 기술개발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게 신제품 및 품질향상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 ('06년 1,596억)

#### ■ 대상분야

- 일반과제(1년, 1억원) : 단기간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자유응모과제
- 전략과제(2년, 3억원) : 성장유망품목 등 전략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·공고하는 개발과제

#### ■ 신청자격

- 공장등록 보유 중소기업체
  - 다만, S/W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

■ 지원내용

○ 기술개발 총 소요비용의 75%를 정부가 출연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30%를 기술료로 회수

■ 온라인 신청 접수 : [www.smtch.go.kr](http://www.smtch.go.kr)(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)

○ 문의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51)  
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
■ 사업일정

구분	전략 과제	일반 과제
사업공고	12월 26일	4월
신청접수	1월 9일 ~ 1월 25일	4월말 ~ 5월초
업체선정	3월중에 확정	7월 중에 확정

2.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
○ 개발비용의 절감, 개발기간의 단축 등 기술개발과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지원  
 ○ 2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과제로, 기초·핵심기술보다는 기술개발을 통하여 상품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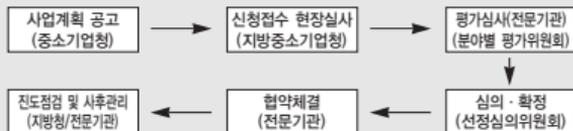
■ 지원내용

○ 과제당 2년, 3억원 한도, 기술개발비의 75%이내를 지원  
 ○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%를 기술료로 납부(5년 분할)  
 ○ '06년도 지원규모 : 62억원  
 · 사업공고 : 05.12.26, 접수기간 : 06.1.23~2.22, 최종선정 : 06. 3월말

■ 지원대상

○ 과학기술부(산기협)에 신고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2개 이상의 중소기업 (소프트웨어, 연구개발, 디자인 관련업종도 포함)

■ 지원절차



- 문의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2, 4445)  
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
 ○ 신청서류 양식 :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/정책마당/기술지원

### 3.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사업

- 사업개요
  - 중소기업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우수인력 등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애로 해소
  -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중기청과 지자체가 Matching Fund로 출연 ('06년 461억)
- 지원대상
  - 대학·연구기관과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구성한 컨소시엄
- 신청자격
  - 대학 및 연구기관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지원내용
  - 지원기간 : 1년
  - 지원비율
    - 지역컨소시엄(대학) : 정부(50%)+지방자치단체(25%)+참여기업(25%)
    - 전국컨소시엄(연구기관) : 정부(75%)+참여기업(25%)
- 문의 및 신청접수
  -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  - ※ 연구기관 컨소시엄 :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(042-481-4457)

### 4. 대학내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

- 사업개요
  - 산·학 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신규 설치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대학내 고급 기술인력 활용 지원 ('06 : 34억원)
  - 특히, 연구인력이 열악한 지방 중소기업과 지역 대학간 협력 연구소 설치를 집중 유도하여 지방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추진

■ 지원대상

- 기업부설연구소가 없고, 자체부담으로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을 고용(또는 일정 기간내 고용예정)한 중소기업으로 대학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\* 단, 연구전담부서를 운영중인 중소기업은 신청 가능

■ 지원내용

-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· 운영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75% 이내, 총 1억원 한도 지원
- 신규채용 연구전담요원 인건비, 설치장소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을 지원

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(042-481-4458) 각 지방중소기업청 시험연구지원팀

5. 생산현장 직무기피 요인 해소사업

■ 사업개요

- 중소제조업 생산현장의 직무기피요인을 발굴 · 개선하여 인력유입을 촉진하고, 생산성 향상 도모
- 제조공정상 수반되는 열 · 냄새, 분진 등 직무기피요인 발생 방지 및 해소를 위한 장비 등 개발 · 보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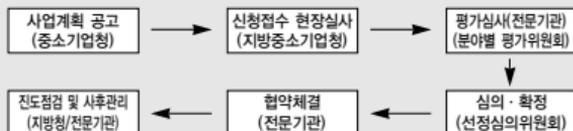
■ 지원내용

- 컨소시엄 과제 : 중소기업 3개 이상과 연구소, 대학 (2년, 5억원, 75%이내)
- 중소기업 과제 : 직무기피 요인 해소효과는 크나,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운 과제 (1년, 1.5억원, 75%이내)
- '06년도 지원규모 : 240억원
- \* 사업공고 : (1차) '06. 2월, (2차) '06. 6월

■ 지원대상

- 신청자격 : 중소제조업(제조업 전업율 50%이상), 대학, 연구소

■ 추진절차



### 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2, 4445)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- ※ 신청서류 양식: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/정책마당/기술지원

## 6.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지원

### ■ 사업개요

- 외자물품 및 신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, 개발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일정기간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, 외화절약에 기여('06년 160억원)
- ※ 사업참여 기관('05년말): 26개 (누계 기준)
  - 정부·공공기관(19개): 국방부, 한전, 가스공사, 철도공사, 소방방재청, 석탄공사, 수자원공사, 남동·중부·남부·동서·서부발전, 수력원자력, 석유공사, 철도시설공단, 지역난방공사, 경찰청, 공항공사, 농업기반공사
  - 기업(7개): 포스코, 효성, 두산엔진, 삼성전자, LG전자, 삼성중공업, 금호타이어

### ■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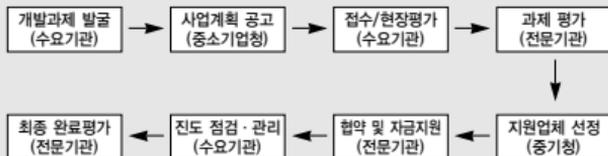
- 기술개발비의 75% 이내에서 2년, 2억원까지 지원
- 기술개발 성공 시 출연금의 30%를 기술료로 징수(5년 분할)

### ■ 지원대상

-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
- 소기업, 소프트웨어업,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등은 예외로 인정

### ■ 지원절차

-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
- 소기업, 소프트웨어업, 공업디자인서비스업 등은 예외로 인정



### ■ 사업일정

- 사업계획 공고: (1차) '06. 2월, (2차) '06. 6월

■ 문의처

○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4, 7)

## 7.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
○ 중소기업이 대학,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우수 기술을 상품화하는데 소요되는 개발자금을 지원 ('06년 90억원)

■ 지원대상

○ 신청일 현재 기술이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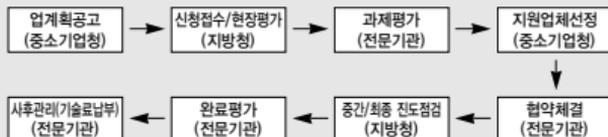
■ 신청자격

○ 공장등록 중소기업, 지식정보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 
- 다만, S/W업체,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은 공장등록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인정

■ 지원내용

○ 기술개발 소요비용의 75%이내, 1억원까지 출연하고, 기술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%를 기술료로 납부

■ 지원절차



■ 사업일정

○ 사업계획 공고 : (1차) '06. 2월, (2차) '06 : 6월

■ 문의처

○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4, 7)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
## 8.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

■ 사업개요

○ 대학교수 실명·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지정, 중소기업·교수 및 학생(3,4학년)

이 1~2년간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참여 학생들을 해당기업에 취업연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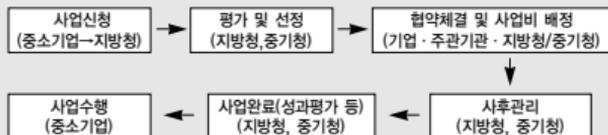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내용

- 산학협력실당 1~2년, 5천만원 내외 지원(1억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75%)
- '06년도 지원규모 : 70억원

#### ■ 지원대상

- 대학내 실험·실습실을 산학협력실로 활용하여 과제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#### ■ 지원절차



#### 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(042-481-4457)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
## 9. 중소기업 기술연구회 결성 지원

#### ■ 사업개요

- 업종별 단체(협동조합 등), 대학,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술 연구회를 구성·운영하여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융합·복합화를 통하여 기술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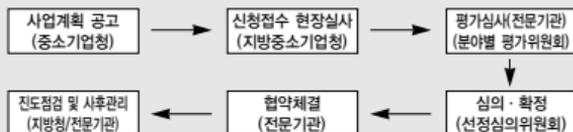
#### ■ 지원내용

- 기술연구회당 총 사업비의 75%이내에서 연 2억원까지 지원
  - ※ 민법상 조합형태로 구성하며 사업기간은 2년 이내
- 기술개발 성공 시 출연금의 30%를 기술료로 회수
- '06년도 지원규모 : 45억원
  - 사업공고 : 05.12.26, 접수기간 : 06.1.23~2.22, 최종선정 : 06. 3월말

#### ■ 지원대상

- 대표회원(대학, 연구기관, 조합, 단체) + 일반회원(2개 이상의 중소기업)으로 구성된 기술연구회

■ 지원절차



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2, 4445)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- \* 신청서류 양식 :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/정책마당/기술지원

10. 신기술사업화 디자인기술개발사업

■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기술개발 성공과제에 대하여 디자인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지원 효과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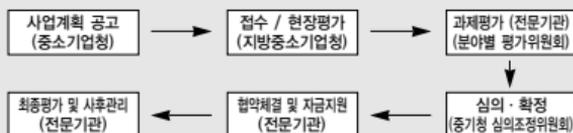
■ 지원내용

- 과제당 6개월, 5천만원 한도, 기술개발비의 75% 이내 지원
-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30%를 기술료로 회수(3년 분할상환)
- '06년도 지원규모 : 20억원
  - 사업공고 : '05. 12월(접수 : 1~2월), '06. 6월(접수 : 6~7월)

■ 신청 자격 및 지원 분야

- 신청 자격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(제품)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
  - \* 대상 : 기술혁신개발, 이전기술개발, 기업협동형 기술개발
- 지원 분야 : 성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개발 지원(개발제품의 개선 포함)
  - \* 개발제품의 특성에 따라 시각(캐릭터 등), 포장디자인(용기 등) 포함

■ 추진 절차



### 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4, 7), 각 지방중소기업청
-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팀(031-780-2092) 및 지원

## 11. BI 창업기업 공동기술개발사업

### ■ 사업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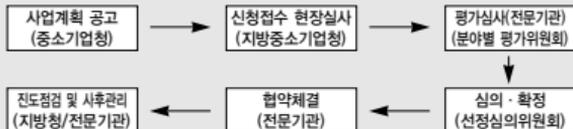
- 창업보육센터(Business Incubator, BI) 입주기업간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창업 성공률 제고

### ■ 지원내용

- 과제당 2년, 3억원 한도, 기술개발비의 75%이내를 지원
-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%를 기술료로 납부
- '06년도 지원규모 : 20억원
  - 사업공고 : 05.12.26, 접수기간 : 06.1.23~2.22, 최종선정 : 06. 3월말

### ■ 지원대상

- 중기청 지정 BI(291센터) 창업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
  - \* BI 입주기업 2개 이상의 동종·이업종 컨소시엄 구성 가능
- BI 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컨소시엄(BI 센터장은 컨소시엄 자문위원으로 참여)



### 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2, 4445)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- \* 신청서류 양식 : 중소기업청(www.smba.go.kr)/정책마당/기술지원

## 12. 향토산업 신기술융합화 개발사업

### ■ 사업개요

- 지역기반의 특화된 기술 및 상품을 BT, IT 등 신기술과의 융합화를 통해 “1등 상품”을 발굴·육성함으로써 향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실현

■ 지원기간

- '05. 12월 ~ '07. 11월(2년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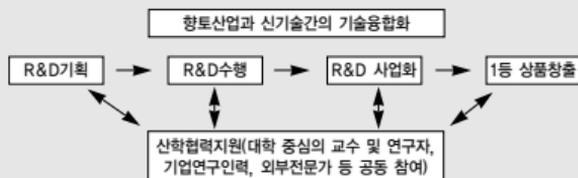
■ 지원규모 및 범위 : 총 8개 내외 과제 (25억원)

- 과제당 5억원 한도내에서 소요비용의 75%까지 2년간 지원
- 기업은 최소 25% 부담 (1.7억원 규모, 현금 및 현물)

■ 지원대상

- 향토자원을 활용, BT·IT 등 신기술을 융합화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형태의 중소기업

■ 추진단계



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산학협력과(042-481-4457) 각 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

13. 개발 및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

■ 사업개요

- 기술성·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개발기술 및 이전기술의 사업화·상품화를 지원하여 기술력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이행을 촉진

■ 지원대상

- 제조업, 제조관련서비스업,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
- 중소기업청 등 정부 시행 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중소기업
-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 중소기업
- \* 한국특허정보원의 선행기술조사 결과 신규성 또는 진보성을 인정받은 특허 출원중인 기술 포함

- 국내 · 외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과 기술이전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 양도되어 이전 받은 결과물이 제품화가 가능한 중소기업
- 중소기업청 Inno-Biz 선정 중소기업
- 중진공 구조고도화사업 및 중소기업청 기술지도사업 참여 중소기업

#### ■ 지원조건

- 대출금리: 연 4.4%(신용등급에 따라 0.5% 할인 또는 할증금리 적용)
- 대출금리: 연 4.4%(신용등급에 따라 0.5% 할인 또는 할증금리 적용)
- 대출기간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대출한도: 업체당 연간 5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3억원 이내)
- 대출방식: 중진공신용대출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

#### ■ 지원절차 · 방법

- 자금신청 · 접수: 중진공 지역본부
  - \* 보증서부 대출일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접수
- 예비평가(신용상태 평가) 및 본 평가
  - 예비평가 통과업체에 대하여 지방중기청, 중진공 지역본부 공동으로 현장실사를 통한 사업타당성 평가수행
- 지원결정
  - 본 평가 통과업체를 대상으로 각 지역본부별 자금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결정
  - 지방청 및 중진공 평점을 감안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결정
  - \*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서부 담보일 경우 기보평가센터에서 평가 후 보증가능금액을 지원금액으로 결정

#### ■ 지원시기

- 2006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

#### ■ 지원규모 · 내용

- 지원규모: 850억원(425업체)
- 지원내용: 개발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
  - 운전자금: 발기술 및 특허의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, 시장 개척비용, 추가개발비 등
  - 시설자금: 활용한 제품 양산에 소요되는 생산설비, 시험검사설비

#### ■ 신청업체 준비서류

- 공단 소정 신청서 양식 1부
- 최근 3개년 재무제표

- 신청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(성공 판정공문, 특허등록원부등)

■ 문의 및 접수기관

- 중소기업진흥공단 해당 지역본부,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기술평가센터

14. 기술혁신 소그룹 지원사업

■ 사업개요

-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분위기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자율적인 기술혁신 소그룹 결성을 지원 ('06년 30억원)
- 기술혁신 소그룹이란 기업의 기술연구 및 생산공정 부문에서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모임으로서 기업직원,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모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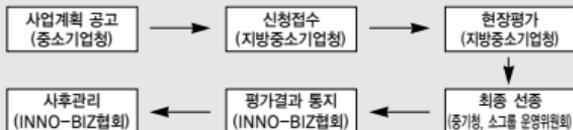
■ 지원대상
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(Inno-Biz)
- 기술혁신 시스템이 구축된 Inno-Biz를 자발적 혁신 선도그룹으로 육성

■ 지원조건

- 업체당 10백만원 한도로 기술혁신 소그룹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
■ 지원절차



■ 문의처

- 중소기업청 기술정책과 (042-481-4449, 4438)

15. 신기술아이디어 사업화 타당성 평가

■ 사업개요

- 예비창업자나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의 성공가능성을 전문평가기관에서 사전검증 받을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 (06년 30억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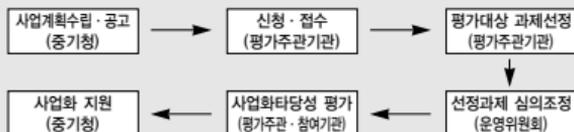
### ■ 사업내용

- 210개 과제의 사업타당성 평가비용 75% 평가주관기관에 출연 지원
  - 매년 2회 신청(1회 2월 140과제, 2회 7월 70과제, www.smbafs.or.kr)
  - 예비창업자 또는 100인 이하 중소기업
  - 신청자 부담 25%(중소기업 : 현금10%, 현물15%, 예비창업자 : 현금5%, 현물20%)

### ■ 추진경위

- 우수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사업성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
  -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'02년부터 실시

### ■ 사업추진체계



### ■ 기대효과

-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착수하기 전에 사업아이템의 성공가능성을 사전 검증 받도록 지원함으로써,
  - 기술개발의 중복과 실패를 방지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여 R&D자금 등 국가재원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